

목동제일교회 장학규정

제 정 : 2022. 4.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회의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며 신앙성장과 교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이를 위해 조성된 장학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교회 소속 중·고등부 및 청년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3조 설치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장학팀장, 서기, 회계, 장학위원, 담당교역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 구성 위원은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담당장로는 위원회 소집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필요한

사항을 당회와 협의한다.

3. 장학팀장은 교회 장학제도 운영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서기는 장학위원중 선정하여 위원회 제반업무 진행에 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5. 회계는 장학위원중 선정하여 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6. 담당교역자는 교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소관업무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장학금 조성 및 관리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4. 장학규정 개정 및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5. 장학제도 발전에 관한 기타 사항

제6조 회의소집

1.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장학팀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장학금 종류 및 중복수혜 제한

제7조 장학금 종류

본 교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목동제일교회 장학금”이라 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랑장학금
학업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신앙과 학문적 자질을 겸비

하고 미래 교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위한 장학금

2. 봉사장학금·

교회내 각종사역, 중·고등부, 청년부 활동 등에 숭선수범하고 교회발전에 기여함이 인정되어 타에 모범이 되는 자를 위한 장학금

3. 특별장학금

담임목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위한 장학금

제8조 중복수혜 제한의 원칙

1. 장학금의 혜택은 한 종류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 수혜 대상인 경우 유리한 조건의 장학금을 적용한다.
2. 다자녀 가구인 경우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자녀 중복 수혜의 결정은 해당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장 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제9조 추천시기

장학생 추천은 매학기 위원회가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상자 추천

장학생 후보자 추천은 본 규정이 정하는 지급 대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기별로 하되, 공고한 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접수 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상자 신청 및 추천

가. 사랑장학생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교구장, 해당부장(부감)의 추천 하에 담당교역자가 확인 후 제출 한다.

나. 봉사장학생은 해당부장(부감)이 추천하고 담당교역자가 확인 후 제출한다.

다. 특별장학생은 담임목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천한다.

2. 구비서류

가. 사랑장학생

- * 신청서 및 추천서(본 교회 소정 양식)
-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편·입학/복학 확인서류
 - 직전학기 성적확인 서류(편·입학/복학생 제외)

나. 봉사장학생

- * 추천서(본 교회 소정 양식)

제11조 대상자 선정기준

1. 사랑장학생

학업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신앙과 학문적 자질을 겸비하고 학습의욕이 강하며 교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인정된 자
(선발 심의시 제출된 학업성적 고려)

2. 봉사장학생

교회내 각종사역, 중·고등부 및 청년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회 발전에 기여한 자

3. 특별장학생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2조 장학금 지급 및 수혜기간

1. 장학금 지급은 중·고등부 학생은 부모님 계좌로, 청년부 소속 자는 본인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시기는 학기시작 전으로 한다.
2. 사랑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해당학교 총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예: 4년제 대학/8학기)
3. 봉사장학금의 수혜기간은 개인당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장 장학기금의 운영 및 회계

제13조 회계 연도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장학금 재원

1. 장학기금으로 편성된 교회예산
2. 장학헌금 : 장학금 조성을 위한 목적헌금
3. 장학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위원회 심의 후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각종 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금

제15조 운영지침

장학생 선발인원, 장학금 금액을 포함한 연도별, 학기별 운영계획 및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임목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장 제2조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가. 사랑장학생은 본 교회 소속 중·고등학생 및 대학 재학생(신·편입생 및 복학생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봉사장학생은 본 교회 소속 중·고등부, 청년부원으로 한다.
 - 다. 특별장학생은 예외로 한다.
3. 이 규정을 개폐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회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의결 합니다.

2022 . 2 . 7

담임목사 : 김성근

담당교역자 : 이일도 이일도

담당장로 : 유병렬 유병렬

장학팀장 : 박용규 박용규

장학위원 : 김원기 김원기

장학위원 : 김판봉 김판봉

장학위원 : 민병원 민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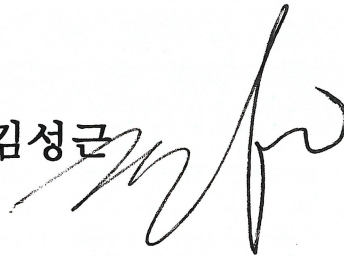
장학위원 : 오세건 오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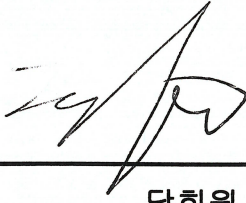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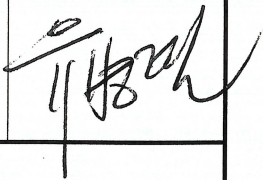
장학위원 : 정용관 정용관

위와 같이 당회가 승인 합니다.

2022 . 4 . 17

당회장/담임목사 : 김성근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Kim Seong-geun', written over the printed name.

결재	당회장		담당위원장	
	당회원			
	이종영 허천우 최광우 김재기 김성환 김재호 유병환 이동석 이봉익 김재 김희택 김병철 김연관 김완순 김두문 박진영 김대웅 김현진 이영호			

장학규정 개정

장학팀

2022년 4월 17일